

서울특별시 시대문안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호	964
-----------	-----

2016. 04. 26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 제안경위

- 2016. 1. 28. 남창진 의원 발의 (2016. 2. 2. 회부)

2. 제안이유

-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함(안 제3조)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나.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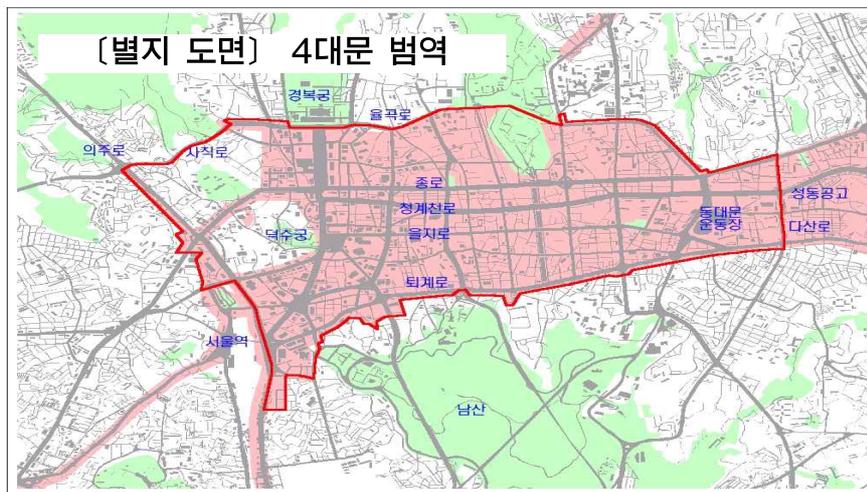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 다만, 이 조례는('09.9.29.제정) “사대문안 관리지역¹⁾”의 관리계획 수립과 관리계획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대문 안에서 한양도성 전체로 역사도심의 공간적 범위가 확대되어 역사도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발표된 만큼('15.5.14), 기본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역사도심 기본계획 계획범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4대문 범위〉

1) “사대문안 관리지역”이라 함은 사대문안 성곽(유곽을 포함한다)으로 둘러싸인 지역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하는 4대문안 지역을 포함함(제2조제1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사대문안 관리계획의 수립)</p> <p>①~② (생략)</p> <p>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u>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u> 사대 문안 관리계획을 반영할 수 있다.</p> <p>1.~5. (생략)</p> <p>④ 시장은 제1항의 사대문안 관리계 획 <u>수립시</u> 지역특성에 따라 권역을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p> <p>⑤ 시장은 제1항의 사대문안 관리계 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u>타당성 여 부를 전반적으로</u>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할 수 있다.</p>	<p>제3조(사대문안 관리계획의 수립)</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변경하고자 할 때</u>----- -----.</p> <p>1.~5. (현행과 같음)</p> <p>④ ----- --- <u>수립 시</u> ----- -----.</p> <p>⑤ ----- <u>타당성을</u> ----- -----.</p>

<붙임> 서울특별시 사대문안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 사대문안 관리지역의 역사문화 복원 및 건축경관의 형성을 위하여 도시재생 기준·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대문안 관리지역"이라 함은 사대문안 성곽(유곽을 포함한다)으로 둘러싸인 지역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하는 4대문안 지역을 포함한다.
2. "도시계획시설"이란 도로·공원·녹지·주차장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사대문안 관리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대문안 관리지역의 보전·관리·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대문안 관리지역 관리계획(이하 '사대문안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대문안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기본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

1. 사대문안 관리지역 현황 분석
2. 사대문안 관리지역 발전 기본방향 및 경관형성 목표
3. 분야별 추진전략
 - 가. 역사·문화자원 보전 및 관리 방안
 - 나. 주거환경 정비방안
 - 다. 기반시설 정비방안
 - 라. 문화·복지·교육시설 정비방안
 - 마. 지역별 경관 특성화 방안
4. 실현전략 및 실현방안
5.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대문안 관리

계획을 반영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2.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5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
3.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5. 그 밖의 각 분야별 주요사업의 기본계획

④ 시장은 제1항의 사대문안 관리계획 수립시 지역특성에 따라 권역을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의 사대문안 관리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할 수 있다.

제4조(사대문안 관리계획사업) ① 사대문안 관리계획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경관법」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2. 사대문안 관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중·저층 건축물 위주의 수복형 정비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4. 그 밖에 교육환경개선사업·한옥밀집지역 보전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중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관리계획사업을 주거지역 관리계획사업이라 한다.

제5조(시책 반영) 시장은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시 제4조제2항의 주거지역 관리계획사업을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재원의 확보) 주거지역 관리계획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일반회계 이외에 서울특별시도시개발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